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1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2인

1.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14:00~19:1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1월 29일)

2.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7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 불참 임원
 - 이사(0) :
 - 감사(0) :
- 배석 교직원
 - 법인(3) : 사무국장 박재순, 과장 임지윤, 담당 이현민
 - 학교(5) : 총장 이동현, 교무처장 정선호, 기획경영본부장 장희선, 총무처장 박종민, 기획경영부분부장 이석윤, 기획예산실 계장 박종선

4. 안건

- 제1호.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승인제청 심의
- 제2호.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승인제청 심의
-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심의
- 제4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인제청 심의
- 제5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제청 심의
- 제6호. 폐과 교원 소속 변경 및 면직 등 승인제청 심의
- 제7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승인제청 심의
- 제8호. 기타 안건
 - 1) 정관 일부 개정 승인제청 심의
 - 2)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류원렬 교목실장·신학과 교수(이하 '교목실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412장을 다 같이 부르고, 교목실장이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90편 12절, 고린도전서 10장 31~33절을 봉독하고 교목실장이 '유한한 삶, 궁극적 관심'의 주제로 성경 말씀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교목실장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개최 정족수를 충족하고 감사 재적인원 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01.06.(화)에 개최된 제250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보고하다. '제1호. 제9대 평택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심층 발표 및 면접 평가 심의'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제2호. 기타 안건'으로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이 있었음을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제250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이사장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무 처리'의 순서 변경을 제안하다. 먼저 안건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제4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인제청', 제5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제청', '제6호. 폐과 교원 소속 변경 및 면직 등 승인제청', '제7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승인제청'을 먼저 심의하고 '제1호.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승인제청', '제2호.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승인제청', '제8호.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으므로 이사회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정재흠 감사 배석)

[의안]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 제청

이사장이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1.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 사유는 현행 총장 임용 규정상의 연임 평가와 차기 선임 절차 간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취지에 따라 총장의 생애 통산 임용 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다. 이어 「정관」 제44조 제2항의 현행안은 총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3개월 이전 직무 수행 성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은 총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생애 통산 2회를 초과하여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설명하다. 부칙에는 정관 시행일과 함께 시행 당시 이미 통산 2회 이상 임용된 자는 현재 임기 종료 후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법인에서 보고한 자료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별지로 나눠 준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정관」 제22조에 이사장 임기 규정이 있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정관」 제22조 제3항은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장 임기 또한 이사장 임기 규정과 같은 형태로 정비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다. 해당 내용이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른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on the right margin, including a vertical stamp that reads '감사' (Audit).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on the left margin, including a vertical stamp that reads '50'.

표준 문항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당초 안건대로 할지 수정안으로 할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안을 정할 것을 요청하다.

가 별도로 배부된 수정안이 간결하고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에 찬성한다고 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김우영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p>○ 의결 사항</p> <p>•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p> <p>1. 「정관」 규정 개정 : 원안 승인</p>
개정안
<p>제44조(임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u> <신설 2006.12.7., 개정 2012.7.23., 2021.12.06., 2022.12.26., 2023.04.27., <u>2026.00.00.</u>></p>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총장의 임용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8대 총장을 포함한다.</p>

이사장이 이어서, 2. 규정 제·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정선호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제출된 자료의 1) 안건은 제249회 이사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학교로 반려된 건이 아니었기에 교무팀에서 재상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은 재임용 기준 관련 규정의 정합성 개선과 일부 자구 수정을 포함한 내용이라며 세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다.

가 산업체 경력 인정이 부족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동일한 경력 기준이 유지된 점에 대해 경력 연수 완화 방안을 검토했는지와 또한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신규 임용할 때 퇴직 전 직급의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산업체 경력 인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질문하고, 특히 산업체 경력자는 상위 직급 임용이 가능하나 기존 대학 교원 출신은 상위 직급 임용이 제한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이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상위 직급 임용 제한 규정은 부교수 경력자가 교수 직급으로 임용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가 다른 대학에서 부교수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위 직급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없게 되어 교육·연구 경력 14년 이상이면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는 상위 규정과 충돌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학에서 교육·연구 경력을 쌓은 경우 오히려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된 뒤 장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본교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다른 대학에서 부교수로 일정 기간 근무한 우수 인재가 본교로 이동할 경우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부교수 1년 차로 시작하게 되면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직급 상향

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무 연차의 일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해당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이사장이 해당 기준을 원칙 규정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별도의 결의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제기한 다양한 사례를 모두 규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가 연구기관 등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았음에도 학교 사정에 따라 낮은 직급으로 임용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경력 산정은 학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 소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직급은 원칙에 따르되 경력에 따라 일정 연차를 인정하는 방식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다.

아울러 제28조 재임용 기준에 대상 직급이 조교수·부교수·교수로 규정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규정이 교수의 정년 보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묻자 교무처장이 해당 재임용 기준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임용 교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최초 임용 후 초기 2년 이후에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다.

이 교육·연구 경력 14년을 산업체 경력 20년으로, 9년을 15년으로 대체한 기준에 상호 관계가 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경력 14년은 통상 50대 초반의 연령대가 되므로 산업체 경력 기준도 유사한 연령대가 되도록 20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가 국제저명학술지는 연구재단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나 국내 1급 학술지의 경우 등재지로만 한정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신규 임용 시에는 등재 후보지도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규정에서 기준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교무처장이 최초 재임용은 2년 후 이루어지는 평가로 이후 재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최초 단계에서 연구 실적을 한 번 걸러내는 취지로 등재 후보지 대신 등재지를 명시하기로 당시 논의되었다고 설명하다.

가 설명 취지는 이해하나 동일한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단계에서는 등재지로 제한하면서 재임용 단계에서는 등재 후보지가 동일 점수로 인정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등재 후보지는 논문 심사의 강도가 등재지보다 약한 것이 일반적이는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 연구자들이 굳이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려 하지 않을 수 있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언하다.

교무처장이 「교원업적평정 규정」 개정을 통해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의 점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1년 이상 논의하고 있으나 쉽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현재는 교수들이 대부분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 등재 후보지 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언하다.

가 등재 후보지에 논문이 게재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자 교무처장이 해당 사항은 「교원업적평정 규정」과 연동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원 인사 규정」에서 별도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다.

가 의 의견에 동의하며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등재 후보지 논문을 평가 점수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며 신규 채용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업적평가에서도 등재지 중심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등재 후보지를 인정하는 제도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교원업적평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사장이 해당 규정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 문구를 정리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교원업적평정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교원업적평정 규정」은 2학기 신규 교원 지원 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교원 인사 규정」 안은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정리하자고 하다.

장희선 본부장(이하 '본부장')이 3)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다. 본부장이 2025 학년도 내부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기존 수당 규정을 재정비하고 규정 없이 지급되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며 상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다.

가 규정 개정안에 별표를 추가한 부분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근무수당, 특별강의수당, 논문지도 및 심사수당 지급 대상이 '교직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강의와 논문지도는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며 기타 예상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질의하자 본부장이 예산 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다.

가 그동안 해당 기준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고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 보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이번 규정 개정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보다 대학이 제시하는 수당 기준 금액을 함께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다.

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라고 설명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자 부분부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 세부 항목을 규정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수당들을 별도로 합산한 자료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연간 소요 규모를 산출하여 제시하겠다고 답변하다.

가 현재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향후 재검토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다.

부분부장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불가피하게 지급하던 수당을 규정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수당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하다.

가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수당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보인다고 말하며 인센티브는 학교 발전을 위한 별도의 계약 사항으로 둘 수 있으나 입시수당 등 일부 수당은 일비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수당의 필요성을 구분하여 재정 측면에서 학교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다.

부분부장이 해당 수당들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관행 속에서 운영되어 온 것이라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수당 항목별 필요성과 도입 배경을 정리해 보고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다.

이사장이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4) 「교통안전 관리 규정」 제정 안건을 상정하며 박종민 총무처장(이하 총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총무처장이 「교통안전 관리 규정」 제정 사유는 교내 안전한 교통 문화 관리를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부 주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사항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다.

가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자 총무처장이 교육부에서 5년마다 학교 안전 인증 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제정되면 평택대학교는 우수 인증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답변하다.

이 규정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만들고 시설만 갖추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안전 규정은 인증을 위한 보여 주기식 조치가 아니라 교직원의 실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가 규정 제정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며 제정안 내용이 외부 컨설팅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 질의하고 특히 교내 운행 속도 제한이나 주차요금 징수, 운전자 의무 등 세부사항이 과도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

총무처장이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컨설팅을 받은 후 컨설팅 기관의 점검을 거쳐 제정을 상정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가 해당 규정이 대학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규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학교에 더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주차 유도 반과 지도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교내 속도 제한을 시속 10km로 규정한 부분은 타 대학의 20km 기준보다 엄격하여 현실적인 운행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통행을 전면 금지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며 규정 제정과 함께 시설안전팀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사장이 해당 규정은 필요에 따라 통과시키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총무처장에게 요청하다.

이사장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뒤 전체 이사 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개 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1개 개정(안)은 미승인으로 최종 수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토록 하여 재심의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가 결정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승인제청

2. 규정 제·개정 : 일부 승인

구분	규정명	의결 결과
1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①인재 확보를 위한 최소 경력 요건 완화, ②직급 원칙 기반의 합리적 경력 산정 체계 구축, ③실무 경력 일부 인정 등 유연한 제도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원업적평정 규정」을 2026-2학기 신규 교원 지원 시부터 적용	원안 승인
2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차기 이사회(제253회)에서 재심의 - 각 수당 항목별에 대하여 재검토 후 세부사항 보고	미승인
3	「교통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원안 승인

- 추가 보완될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제253회)에 보고

○ 개선 권고

- 제도의 적용 방식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최적의 문구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술한 논의 사항과 규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이사회까지 최종 수정안을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

[의안] 제4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4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해당 채용은 2025년 10월 23일 제245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전임 교원 채용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시 이사회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학과 1명, 지능형반도체학과 1명, 국제무역행정학과 1명,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1명 등 총 4명의 신규 전임 교원 채용 계획을 승인하고 1차 공고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승인 없이 채용 완료 시까지 추가 공고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하며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전공 적합자가 없어 총장이 제청하지 않았고, 지능형반도체학과와 국제무역행정학과는 각각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지정하여 제청하였고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는 기초정보 심사 부적합 및 지원자 수 부족으로 제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가 지능형반도체학과 1순위 지원자의 박사학위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면접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는 기존 경력 등을 인정받아 단기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지원자도 기간 내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하다.

가 지능형반도체학과 1순위 지원자의 산업체 경력을 보면 대부분 사원급으로 1년 또는 1년 미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해당 지원자는 1차와 2차 채용 과정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전공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이므로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다.

가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의 경우 임용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서류 단계에서 적합자가 없었던 것인지를 묻자 교무처장이 해당 학과는 재봉 관련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채용을 희망했으나 대부분 디자인 계열 지원자였고 전공 적합도가 충족되지 않아 1차와 2차 모두 적합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답변하다.

가 지능형반도체학과와 국제무역행정학과 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후보 중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묻자 교무처장이 지능형반도체학과는 라이스사업과 캠프사업이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학과도 2개가 운영되고 있어 전임 교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제무역행정학과는 향후 3년 내 전임 교원이 전원 퇴직할 예정이며 무역 전공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과에서 채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가 해당 채용이 정년트랙 조교수 임용인지를 묻자 교무처장이 현재 학교는 정년 트랙만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다.

가 학교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특임 교수 등 다른 형태로 전환해 채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채용 절차가 서로 달라 이번 전임 교원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임용은 무산되며 이후 필요에 따라 특임 교수 채용은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다.

가 해당 지원자가 임용될 경우 3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반도체

학과 전임 교원 수를 묻자 교무처장이 해당 학과 전임 교원은 총 3명이라고 답변하다.

가 이번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계약학과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30% 충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반도체 분야 사업단 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원 추가 충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하다.

가 해당 부분을 시간강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학과 전임 교원이 필요한 영역은 시간강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반도체 분야 사업에서도 특임교수·겸임교수·산업체 교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트랙이 4개로 운영되고 학기별 개설 교과목을 고려할 때 전임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가 채용 일정이 촉박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임용을 승인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다. 또한 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발언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과 차원에서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고 학교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가 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번 학기에는 전임 교원을 무리하게 채용하기보다 산업체 교수 등 가능한 대체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며 2학기에는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조건을 개선하여 특히 반도체 분야에 집중해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가 의 경력 중 특정 산업체(비000000, 영000, 휴00) 경력에 경력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별도의 이력 검증을 실시했는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해당 지원자의 연구 경력은 대부분 IT 계열인 것이 사실이나 반도체 분야가 IT 기반의 종합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자 면담을 통해 확인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다.

가 비000000는 공신력 있는 휴·폐업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휴00은 연 매출 약 5억 원 규모의 도매업 회사로 연구소장 직위와의 정합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영000는 PCB 제조 회사로 반도체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며 전반적인 산업체 경력이 반도체학과 전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하다. 아울러 박사학위 취득 대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후 경력 흐름이 일반적인 박사인력의 진로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다.

교무처장이 지원자의 경력 검증은 제출된 원본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사에 대한 별도 확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임용이 결정될 경우 학위 관련 사항은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가 한국폴리텍 대학에서의 평판 조회 여부를 질의하자 정선호 처장이 함께 근무한 교수와 전 산학처장에게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지원자는 안성시와 연계된 반도체 사업 추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 근무지에서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다.

가 해당 지원자들이 임용될 경우 2년 후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지 확인하며 그때 경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는게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다.

가 재임용을 전제로 하되 현재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두 후보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교육 및 유사 산업체 경력은 2순위자가 다소 높다고 설명하며 다만 채용은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를 각각 30%, 30%, 40% 비율로 반영한 정량 점수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된 것이므로, 해당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다.

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능형반도체학과 1순위 지원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재적 이사 9명 중 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나머지 이사들이 찬성하여 지능형반도

체학과 전임 교원 채용을 승인한다. 이어 국제무역행정학과 전임 교원 신규 임용에 관하여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교무처장이 국제무역행정학과 1순위 지원자는 평택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국제통상학을 전공하였고 2순위 지원자는 송실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해운물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설명한다.

가 앞선 지능형반도체학과 채용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승인한 측면이 있으나 국제무역행정학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며 무역 분야는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는데 직장을 병행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를 전임 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며 대학 교수는 연구 실적과 논문 작성이 중요한데 파트타임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향후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조직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단순 강의 중심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교수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채용의 적절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국제무역행정학과 전임 교원 수급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현재 전임 교원 3명 중 1년 내 퇴직 예정자 1명, 2년 내 퇴직 예정자 1명, 4년 내 퇴직 예정자 1명이 있어 학과 차원에서 전임 교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많은 학과로 석사·박사 과정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고 교수 1인당 담당 강의 시수가 20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1순위 지원자는 본교에 다섯 차례 지원한 경력이 있으며 무역 실무 전공 지원자가 적은 상황을 고려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원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이사장이 이사회가 다양한 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며 더 이상의 장시간 토론보다는 채용 여부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가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해당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대체 인력으로 운영한 뒤 다음 기회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채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가 향후 학과의 비전과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일정 여유가 있다면 보다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채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다.

이사장이 전체 이사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지능형반도체학과 전임교원 신규임용'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나머지 이사들이 찬성하여 승인하고, '국제무역행정학과 전임교원 신규임용'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반려(미승인)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가 결정한다.

○ 의결 사항

- 제4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인제청 : 일부 승인

(총무처장 이석)

[의안] 제5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5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2026년 2월 4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심의를 실시하고 총장 승인을 거쳐 임용 제청이 이루어졌으며 교수 승진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이 3명, 기준을 충족한 교원이 5명이라고 설명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한 5명에 대해 총장에게 제청을 요청하였으나 총장은 부교수 재임용 기간과 교수 승진 심의 기간이 불일치한 점을 고려하여 현 직급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5명 전원을 미제청하였고 이에 따라 교수 승진 제청 대상자는 없으며 부교수 승진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일반교원 6명, 국제교류중점교원 1명, 연구교원 1명으로 이 중 7명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총장이 미제청하였고 기준을 충족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오 교수 1명만 승진 제청하였다고 설명하다.

가 조교수 재직 기간 중 교수 승진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구조는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조교수 최소 재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 관계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하며 또한 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사회가 승진을 전면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규정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아울러 부교수 승진 기준과 관련하여 통상 승진 심사 연한이 5년인데 실제 평가는 6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승진이 지연될 경우 연구 실적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논문 작성 동기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승진 연한과 평가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이사장이 해당 사항은 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처리하여 학교가 규정 개정에 착수하도록 공식 요청하겠다고 하며 이사회 결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교수사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이사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5호. 2026-1학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제청 : 원안 승인

(정회 16:30) 이사장이 정회를 선포하다.

(속개 16:40) 이사장이 속개를 선포하다.

[의안] 제6호. 폐과 교원 소속 변경 및 면직 등 승인제청

이사장이 '제6호. 폐과 교원 소속 변경 및 면직 등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2023년 4월 25일 간호학과 전임 교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요청되었고 2024년 8

월 2일 해당 교원 4명 전원이 해임 일자를 기준으로 복직되었고 2025년 2월 17일 이사회에서 「학과 폐과 규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희망 학과로의 소속 변경과 재교육을 통한 소속 변경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9월 9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간호학과 교원 소속 변경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의 재심사 요청이 기각되어 4명 전원 희망 학과로의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이후 규정에 따른 재교육 청원을 통한 소속 변경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5년 11월 교수가 재교육을 통한 수업 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교육 신청과 재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 2026년 2월 4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수에 대해 폐과에 따른 면직이 의결되었다고 설명하며 다만 교수는 동아시아융합 자율전공학부로의 소속 변경을 받아들여 재교육을 통한 소속 변경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면직 및 소속 변경 제청 현황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총장 제청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다.

(이동현 총장 배석)

이사장이 학교 제청안대로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후 절차와는 별개로 2월 28일 자로 3명은 교원 신분이 종료되고 1명은 소속 변경을 통해 교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해당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인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본적 관점에서는 의 자질과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변경 제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내외적으로 학교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본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의 책임과 영향을 더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교수 역시 다른 교원들과 동일한 공동 책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사장이 공동 책임을 묻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자 네 명 전원을 모두 면직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다.

가 규정에 따라 소속 변경 신청이 두 차례 진행된 것인지 질의하며

두 차례 절차에서 모두 다른 학과에서 수용하지 않아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교무처장이 경우 소속 변경 신청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가 해당 교원 4명에 대해 과거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학교에 끼친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결정은 학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결정이었다고 상기시키며 의 소속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징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징계 없이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를 묻다.

교무처장이 현재 징계는 보류된 상태이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 양정 등 구체적인 징계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향후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다.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재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가 이사회에서 소속 변경을 승인할 경우 일정 부분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또한 법인과 학교의 당초 의도가 해임이었다면 그에 대한 계획 없이 소속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왜 직권 면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사장이 학교에 보충 설명을 요청하다.

가 소속 변경 조건에 재교육 이행과 동시에 산학협력 및 국제사업 수행을 요구하는 단서 조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재교육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재교육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자 이전 설명에서는 재교육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자 교무처장이 당초에는 정관상 휴직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 결과 개인적 발전을 위한 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학교 요구에 따른 휴직이므로 개인적 발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하다.

국책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 교수로서 본연의 강의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급여는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러한 구조는 징계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간혹학과 폐과에 이를 정도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던 교원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어렵다고 발언하자 총장이 현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며 소송이 종료되면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므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징계를 통해 다뤄질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다.

이사장이 전체 이사의 논의 결과와 총장의 건의를 종합하여 대해 첫째, 소속 변경을 승인하되 재징계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둘째, 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후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6호. 폐과 교원 소속 변경 및 면직 등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1) 간호학과 교수 : 직권 면직

2) 간호학과 교수 : 소속 변경 승인

- 재징계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
- 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

[의안] 제7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7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이 2025학년도 징계위원회는 교원 징계위원회, 직원 징계위원회, 직원 재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내 위원의 임기는 1년, 외부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설명하다. 외부 위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교내 위원만 일부 변경되었다고 설명하며, 변경된 교내 위원은 교원 징계위원회는 _____으로 변경되었고 직원 징계위원회는 이상무, 오 _____으로 변경되었으며 직원 재심위원회는 _____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법인위원 임기 변경 외 다른 사유 없음을 설명하고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김병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7호.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의안] 제1호.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승인제청 심의

[의안] 제2호.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1호.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승인제청 심의'와 '제2호.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에게 재정분과
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가 법인회계·교비회계 공통 권고 사항으로 회기 말 이월 재원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결산 부속서류인 '미사용차기이월자금 명세서'를 최종 추가경정예산 시 작성·첨부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며 이는 양 회계 모두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다.

법인회계 관련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고 하다. 매년 발생하는 부담금이 재정 운영의 비효율 요인으로 판단되어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적합 직무 발굴 등을 통해 의무 고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로 보증금을 초과하는 악성 채권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권고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으로 서울 피어선빌딩 공간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평택에서의 검토 경험을 참고하여 전력 여건 등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가능성 타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다. 이어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내 발생한 악성채권 대손처리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여 안건에 포함하여 상정되었음을 부연하다.

이어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재정분과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교직원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 보고를 권고하였고, 당초 이사회에 보고된 상생협력 비용 재원 9억 5천만 원에 비해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이 약 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보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국제교류원 수입에 대한 상세 보고를 요청하였다고 하다. 국제교류원 수입이 대학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 부서에서는 세부 항목별 실제 데이터와 향후 추이를 포함한 재정 기여도 분석 자료를 이사회에 공유할 것을 권고하였고, 예산서 부속서류 검토를 권고하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정교한 예산 수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건비 및 등록금 명세서 등 주요 세입·세출 항목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고 보고를 마친다.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최종 추경예산 (a)	3차 추경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d=(c/b)%)
법인	일반업무회계	841,437,929	841,437,929	0	0%
	수익사업회계	3,765,461,573	3,825,461,573	-60,000,000	-1.57%
대학	교비회계	47,624,908,000	47,582,512,000	42,396,000	0.09%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총괄

(단위 : 원)

2025.11.15
 간 서

이사장이 내용을 종합하여, '제1호.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승인제청 심의(법인회계, 교비회계)'와 '제2호. 2026회계연도 본 예산 승인제청 심의(법인회계, 교비회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의안] 제8호. 기타 안건

1) 「정관」 일부 개정 심의

이사장이 '제8호. 기타 안건'으로 '1) 「정관」 일부 개정 심의'를 추가 수정안을 상정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13조 제2항의 "임용 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조항은 법인의 권한 사항으로 「정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과 긴급 발의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일부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다. 이어 전체 이사에게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사무국에 「정관」 제44조 추가 사항에 대하여 낭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국 임지운 과장이 정관 제44조 추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다.

이사장이 해당 내용을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44조(임용) 제3항에 추가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이사에게 의견 유무를 묻고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긴급 발의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제44조(임용) 제3항에 "임용 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지훈 이사의 동의와 박승현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2)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8호. 기타 안건'의 '2)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로, '3)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8호. 기타 안건**

1) 「정관」 일부 개정 심의 : 원안 승인

개정안

제44조(임용) ③ 총장 이외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임용 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비전임교원(강사, 겸임,

초빙, 대우, 명예 등)의 경우,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05.10., 2019.10.25., 2021.12.06., 2026.00.00.>

2) 기타 안건

가)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

나)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회의록 비공개 범위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 녹취록 보관

9. 보고 사항

- 1) 장기발전계획 PTU VISION 2030 보고
- 2)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보고
- 3) 평택대학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기본 계획
- 4) 주요 소송 진행 상황 보고

이사장이 보고 사항 '제1호. 장기발전계획 PTU VISION 2030 보고', '제2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보고', '제3호. 평택대학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기본 계획'에 대하여 대학에 설명을 요청하고, '제4호. 주요 소송 진행 상황 보고'는 법인사무국에 설명을 요청한다.

본부장이 '제1호. 장기발전계획 PTU VISION 2030 보고'을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장이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치와 추진 일정을 명시한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며 이에 이사회 전원이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수용하고 차기 이사회까지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하다.

부분부장이 '제2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보고', '제3호. 평택대학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기본 계획'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사무국장이 '제4호. 주요 소송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다. 이사장이 보고 사항에 대해 참석 이사들에게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음으로 보고사항 제1호~제4호 안건을 종결하다.

10.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9시 10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